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 확대 〉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32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 확대	2
※ 참고자료	6
1. 2024년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	6

I. 제안경위

2024년 7월 31일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Ⅲ. 검토의견

1.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 확대

현행법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출연금 외에 보조금, 융자금을 추가함으로써 보조금이나 융자금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생략)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u>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u> ,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② ----- <u>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융자금</u> ----- -----.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u>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u> .	③ ----- ----- ----- <u>출연금·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u> .
④ 제3항에 따라 <u>출연금</u> 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④ ----- <u>출연금·보조금·융자금</u> ----- -----

현행	개정안
발 결과를 사용, 양도(讓渡), 대여(貸與)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른 <u>출연금</u> 의 지급·사용 및 <u>관리</u> 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u>출연금·보조금</u> ----- <u>관리, 용자의 대</u> <u>상·기준·상환과</u> ----- ----- -----.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¹⁾, 환경부는 2024년의 경우 총 34개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²⁾.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2) 참고자료 1. 2024년도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

또한, 현행법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2024년 예산은 2023년 예산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한 상황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 하는 등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	'21	'22	'23	'24
정부 출연금	환경부	318,329	363,630	390,629	406,373	301,279
	그 외	-	-	-	-	-
	계	-	-	-	-	-
정부 외 출연금		-	-	-	-	-

※ 출처: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비용을 현행 출연금 외에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융자 방식의 경우 기업에 지원했던 자금 회수가 가능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보조 방식의 경우 민간이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환경부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 이

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는 바, 다양한 재원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³⁾.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투자·융자 연계 방식으로 다양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⁴⁾.

문 의 처
02)6788-5541

3)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22024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4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3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3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3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되어 있으므로, 이들 법안의 심사 경과 및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국회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Ⅱ, 2024.5, p327

※ 참고자료

1. 2024년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⁵⁾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과제수	예산액
1	(혁신도전형)플라스틱폐기물고부가가치자원화기술개발사업(환경부R&D)	5	4,200
2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R&D)	5	2,000
3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R&D)	6	3,651
4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기술 개발(R&D)	5	7,519
5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R&D)	5	3,520
6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R&D)	1	5,915
7	기후위기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개발(R&D)	6	4,770
8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R&D)	2	5,384
9	대기환경관리기술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D)	3	1,610
10	도시홍수시설의 계획, 운영,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R&D)	4	4,500
11	물·대기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주요기자재국산화기술개발사업(R&D)	7	1,296
12	미래 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R&D)	6	6,405
13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R&D)	10	9,500
14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R&D)	6	2,050
15	비이산화탄소온실가스저감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D)	4	1,649
16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R&D)	11	7,707
17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R&D)	12	12,860
18	생태계기반탄소흡수원조성·관리기술개발사업(R&D)	1	1,350
19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R&D)	20	16,105
20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R&D)	24	13,032
21	습지생태계가치평가및탄소흡수가치증진기술개발사업(R&D)	2	4,080
22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R&D)	10	14,840
23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R&D)	4	9,703
24	야생생물유래친환경신소재및공정기술개발사업(R&D)	5	2,400
25	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개발(R&D)	15	2,325
26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R&D)	3	4,700
27	자원에너지회수형고농도하폐수처리공정기술개발(R&D)	2	6,373
28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개발(R&D)	1	9,038
29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R&D)	14	11,153
30	폐자원활용에너지전환실증기술개발사업(R&D)	1	4,698
31	폐플라스틱활용원료·연료화기술개발사업(R&D)	4	7,590
32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	6	2,958
33	환경보건 디지털조사 기반 구축 기술개발(R&D)	5	2,007
34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사업(R&D)	16	16,276
계		231	213,164

※ 출처: 환경부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 기준